

학교 교육 발전과 올바른 자녀 교육에 정성을 다하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교에서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에 있어서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교사의 교육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행복한 교사가 행복한 교육을 만듭니다. 교사가 흔들리면 학생도 흔들립니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양질의 교육을 만들고 양질의 교육은 건강한 인재를 만듭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모두 제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힘이 나고 흥이 나는 행복한 우리 전주반월초등학교 교육이 되도록 아래 사항을 유념해주시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이 상호 존중될 수 있는 학교 문화를 만드는데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교육활동 침해의 개념

교육활동 보호의 목적

- ◆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보호를 명시하고 있는 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의 궁극적 목적은 교사의 교육활동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교육받을 권리)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활동 침해란?

-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한다.) 제19조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 「교원지위법」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기존에 사용하던 ‘교권 침해행위’라는 용어 대신 ‘교육활동 침해행위’라 명명하고, 교육활동 보호 관점에서 교원을 보호하고 있다.

◆ 「교원지위법」

제19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이 법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¹⁾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 가. 「형법」 제2편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1장(무고의 죄),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제314조(업무방해)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1) 「교원지위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유형

□ 「교원지위법」 제19조 및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 규정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은 아래와 같다.

근거	침해행위 유형	비고	
「교원지위법」 제19조 (교육활동 침해행위)	「형법」 제2편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1장(무고의 죄) ,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제314조(업무방해)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무고의 죄’ 신설 (‘24.3.28.)	
	성폭력범죄 행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불법정보 유통 행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신설 (‘24.3.28.)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신설 (‘24.3.28.)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신설 (‘24.3.28.)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²⁾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신설 (‘23.3.23.)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 ³⁾ 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2)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해당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이 법률에 규정됨(2024. 3. 28. 시행)

3) 「교육공무원법」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3. 교육활동 침해 행위 사례

- 명예훼손 피해는 폭언·욕설·협박 등의 부당 행위와 유사하지만, 교원의 정당한 학생지도에도 불구하고 학생·학부모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교사에게 폭언을 하거나, **인터넷 게시판, 언론 등에 허위 사실을 게재**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 또한 부당한 전보 요구나 사직 강요, 허위사실 적시로 사법기관에 고소하는 등 학부모가 개입하여 교권침해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도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예시

- 학부모가 ‘담임교사가 우리 아이를 미워한다’ 라며 반복적인 유사 민원을 제기한 경우
-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힘들어 하니 ‘지필고사 시험범위를 줄여라, 시험문제를 쉽게 내라’ 등 평가에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 학부모가 학생지도에 불만을 품고 담임을 교체해 달라고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등

4.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따른 조치

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의결 또는 분쟁조정

나. 조치사항

- 1) 학생: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처분
※ 학생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조치 시 반드시 학부모 참여(학부모도 특별교육 이수)
- 2) 보호자 등: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보호자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미 참여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5. 학부모와 함께하는 행복 학교 만들기

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하면 안 되는 이유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교원의 교육에 대한 사기와 열의를 떨어뜨리고, 학생들에게 쏟아야 할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게 합니다. 따라서 선량한 다수의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1)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의 학습권이 보호되기 위해서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한 보장과 상호신뢰가 필요합니다.

① 교권(敎權)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2) 학생들의 인성에 위협

민주시민의 교육의 장인 학교에서 교원이 보호받지 못하는 모습은 교육환경을 회복하기 힘든 상황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저학년 학생일 경우 교원은 학교에서 부모의 역할을 하는 존재로서, 학부모와 교원 간의 분쟁은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학생들의 안전에 위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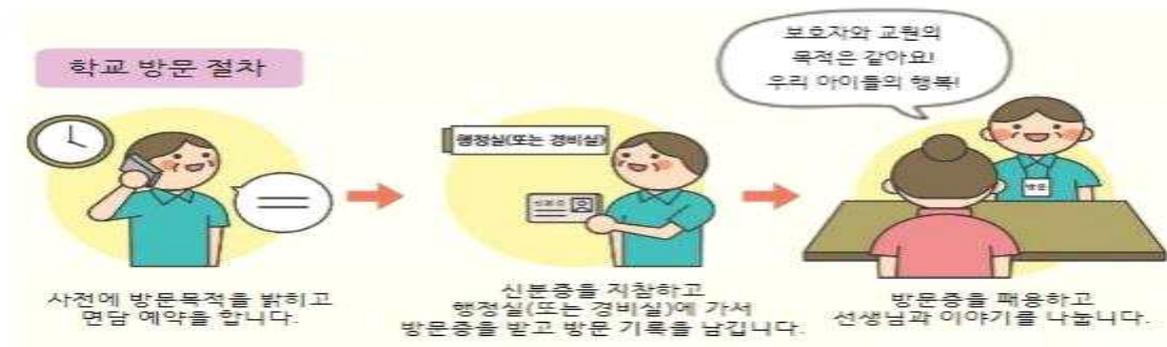
수업 활동과 안전을 위한 준비 시간이 부족하여 학생들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학생은 교육활동 중에 보호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될 수 있으며, 이는 교원과 학교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 학부모의 교육활동 참여

- 학교알리미 활용, 학교운영위원회 활용, 학부모회 참여, 학부모 총회 및 각종 연수 참여, 공개 수업 참여

- 교육적 민원(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사전에 신청

(학부모 민원상담 예약신청<학교소개<전주반월초등학교)



다. 우리 아이들의 바른 성장을 위해서는 가정교육이 중요합니다.

- 가정교육이 튼튼하지 못하면 학교교육도 위험해짐
- 학교 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생활습관, 관계성 교육에는 한계가 존재함
- 가정교육을 통한 내면화가 필요함
- 학생의 인권과 교원의 교육권: 서로 존중하고 윈윈(win-win)하는 상관관계
- 교원과 학부모의 신뢰와 존중: 학생 보호와 교육을 위한 전제조건
 - 학생의 학습의 보장권 보장, 전인적인 성장으로 이어짐
- 교원과 학부모: 자녀(학생)을 키우는 새로운 부모와 같음
- 교원과 학부모의 역할의 연대 중요



교육활동 침해예방 동영상 교육자료 (초등학생)	https://youtu.be/6sVubdFLvSw
교육활동 침해예방 동영상 교육자료 (학부모)	https://youtu.be/VysgbpglOKg

2025. 4. 22.

전주반월초등학교장